

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(제26조 관련)

I. 일반기준

1.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. 이 경우 그 최대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.
2.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.
3. 항만의 특성,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4.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 - 가.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
 - 나.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
II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거 법령	과징금의 금액	
		1차 위반	2차 위반
1.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27조의6	100만원	
1의2.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27조의6	100만원	500만원
2.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·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	법 제27조의6	100만원	500만원

2의2. 항만운송사업자·항만운송관련 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「관세 법」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	법 제27조의6	500만원	
3.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 상 없는 경우	법 제27조의6	300만원	